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  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곽향기, 구미경, 김영옥,  
김춘곤, 윤영희, 이새날,  
이성배, 이은림, 이종배,  
채수지, 최진혁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(안 제19조제4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9조(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)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아목에서 “그 밖에서·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9조(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</u></p>

문서번호

2023101000000028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박성연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#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(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)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